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9월 8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는 인터넷 보급과 영상공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온라인 환경 특성상 복제와 확산이 용이하여 피해영상의 완전한 삭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범위와 심각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피해자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자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지원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는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위탁·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 안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지원 ▲법률 지원 ▲치료 및 회복 지원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디지털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
------------	-----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이규선, 차인영, 이성수
이예찬, 이순우, 정선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